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백종헌·임종득·김예지
서천호·김기웅·김상훈
박형수·구자근·박충권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위기아동·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,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전단 중 “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을 “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